# Yeosu
#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5일 22시 47분

# 목차

목차 2
보도자료 - 전체 3
여수시,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3

# 여수시,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

2023.05.26 조회수 247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담당자 이예린 연락처 061-659-3353

여수시(시장 정기명)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오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.

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된 2021년 6월 이후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.

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과태료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5월까지 2년간 계도기간을 뒀으며 최근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.

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,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한 점 등으로 결정됐다.

시 관계자는 “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"고 당부했다.

한편 임대차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으로 할 수 있으며,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.

| 첨부파일 | |
|---|---|
| 전체(Zip)다운로드 | 1 여수시,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.jpg (241 hit/ 604.6 KB) 미리보기 |

목록


이전글 여수시,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하는 '가치장터' 개…

다음글 여수시립돌산도서관, 다문화 수용성·감수성 향상…
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# Yeosu
# Web Contents

여수시